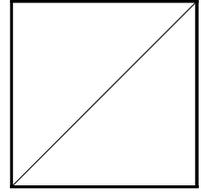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4 호
의 결 연 월 일	2021. 2. 3. (제 3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 등 25종목 ETF 등에 대한  
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도 규 상
제출 연월일	2021. 2. 3.

## 1. 의결주문

-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 등 25종목 ETF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2019.4.17.부터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 등 25종목 ETF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발견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※ 2017.1.17. 한국거래소에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혐의를 통보

## 3. 주요골자

-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

- 과징금 부과

- A : 146,300,000원

- B : 206,100,000원

- C : 186,000,000원

## 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 붙임 1>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의2, 제178조의2 제2항 제2호



- A는 ☆☆증권 등 5개 증권회사가 실시한 ETF 거래 이벤트 등에서 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.3.2.~10.31. 기간 중 본인 및 가족, 친·인척 등 9인 명의의 39개 계좌를 이용하여 ▲▲▲▲▲▲▲▲▲▲ ETF 등 22개 종목을 매매(237,133,758주, 3조8,245억원)하는 과정에서 **총 44,348회, 종목별 일평균 54회의 가장매매**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

[호가관여율 : 1.4%(평균), 부당이득금액 : 1억1,708만원 ]

- B는 ☆☆증권 등 8개 증권회사가 실시한 ETF 거래 이벤트 등에서 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.3.2.~10.31. 기간 중 본인 및 가족, 친·인척 7인 명의의 53개 계좌를 이용하여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 ETF 등 25개 종목을 매매(352,679,918주, 4조6,675억원)하는 과정에서 **총 107,332회, 종목별 일평균 72회의 가장매매**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

[호가관여율 : 1.3%(평균), 부당이득금액 : 1억6,492만원 ]

- C는 ☆☆증권 등 9개 증권회사가 실시한 ETF 거래 이벤트 등에서 상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.3.2.~10.31. 기간 중 본인 및 가족, 친·인척 등 5인 명의의 56개 계좌를 이용하여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 ETF 등 23개 종목을 매매(266,625,507주, 3조1,626억원)하는 과정에서 **총 68,361회, 종목별 일평균 51회의 가장매매**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

[호가관여율 : 1.0%(평균), 부당이득금액 : 1억4,887만원 ]

(붙임 1)

## 관 계 법 규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#### 제178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) ① (생략)

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2.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3.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
4.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수요·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

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)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79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,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1. (생략)

1의2.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,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
가.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

나. ~ 라. (생략)

2. ~ 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
[별표 제2호] 과징금 부과기준

3.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

바. 법 제429조의2의 경우

(1) 기준금액은 법 178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(미실현이익 포함)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, 제2호, 제4호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.

(2)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.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조사단	자본시장조사국
연 락 처	02-2100-2518	02-3145-5640